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8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서미화・이수진・박해철

박지혜・김 윤・박지원

노종면 • 윤종군 • 김예지
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 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 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,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'인권 보호와 향상'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~3호

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진정이 없는 경우에도"를 "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계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
- 3.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의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위원회의 조사대상) ① •	제30조(위원회의 조사대상) ①・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위원회는 제1항의 <u>진정이</u>	③진정이		
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	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		
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	<u> 수 등</u>		
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			
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			
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			
<u><신 설></u>	1. 「계엄법」 제2조제2항에 따		
	른 비상계엄 및 같은 법 제2		
	조제3항의 경비계엄이 선포된		
	<u>경우</u>		
<u><신 설></u>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		
	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		
	재난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		
	<u>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</u>		
	<u> 우</u>		
<u><신 설></u>	3.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		
	사회적참사의 경우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